청각장애인용 공학이 아닌, 청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공학

허일(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및 공원,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차 많은 편의시설(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편의시설 설치 증진법'이라 불린 정도로,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청각장애인이 간절히 원하는 정보접근권 및 시설·설비 이용권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욱이 이 법을 통해 설치되고 있는 편의시설 등도 접근권 보장의 근거 및 실천 원리인 Universal Design 에 걸맞는 시설과 설비가 아니라, 즉, 장애인 등도 이용가능한 시설과 설비가 아니라 '장애인용 시설과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는 화장실 측면에서 세 가지 성이 존재하게 되고 말았다(남자, 여자, 장애인). 미국 Washington D.C. Convention Center 에 설치된 화장실과는 대조되는 측면이다(사진 1).

청각장애인들도 여느 장애인들처럼 청각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라 함은, 안에서 사람이 볼 일을 보고 있음이 문에 표시되거나 불빛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청각장애인들은 밖에서 똑똑하는 소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볼 일을 보아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는 문에 손을 대고 볼 일을 보거나 신발을 벗어 문아래 틈에 밀어 넣고 볼 일을 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 법은 통신시설과 관련하여서도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도 근거 조항이 없어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법 밖의 현실도 청각장애인용 청취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인공와우장치, FM 보청기의 수입 및 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팩스, 문자전화기, 영상전화기의 보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청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영상매체, 원거리 정보통신, 학교 수업, 병원, 공공기관(시청,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경찰서, 법원 등)에 관한 논의와 이 관점에서의 해결채 제시가 미흡한 게 현실이다.

미국의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의 청각장애인들보다 보다 자신감 있게, 뭐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팩스와 문자 전화기, 더 좋은 청취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팩스 및 청각장애인용 문자전화기(TDD의 일종)를 청각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든 관공서, 학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대중 이용시설에 모두 설치하고 TDD 번호와 팩스 번호를 음성 전화번호와 함께 병기하여 청각장애인도 원거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미 전역에 공중전화 3 대 중 한 대는 TDD를 설치하여 미국 어디서나 청각장애인이 원거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진 2). 더욱이 1989년부터 전화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실시하여 음성전화 사용자와 TDD(Telecommunication Device for the Deaf) 사용자 간의 전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사진 3), 2005년 이후는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음성 전화 사용자간의 전화 중계 서비스인 VRS(Video Relay Service)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사진 4,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문자 기반 TRS와 VRS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동시에 시험 서비스하고 있다, http://www.relaycall.or.kr). 즉, 청각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나 청취보조기기 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화, 공공이용시설, 관공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사회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혹은 Universal Design or Redesign 했기 때문에 농인 의사, 물리학자, 교육학자, 전문가 등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청각장애인용 청취보조기기나 정보통신기기만이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좁은 논의에서 청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이용가능한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청각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CI 수술이나 보청기 등의 청취보조기기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 개인을 유능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들이 노력하는 만큼이나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한국 사회 모두 함께 노력하고, 유능해져야 함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가능한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고, 그들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국농아인협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03년 12월 31일 이 법 4조 접근권이 정의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개정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7년 이 법의 제정 당시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도 다른 비지체장애인들처럼 '남의 도움 없이' 해당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기를 요구하였기에 이렇게 정의 내려진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지체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버스타고 싶고, 지하철 타고 싶고, 2층 이상의 건물에 접근하고 싶었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도움 없이 이러한 교통접근 및 시설접근에의

요구가 권리로서 인정되기를 바랬기에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등에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많은 건물 등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부족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기술이 없고(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왕성하게 공부하고 사회참여하고 있음에도 접근권의 구현 방식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지원 받지 못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지체장애인에게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접근권의 정의가 되도록 한 것이다. 즉 보다 보편적인(Universal) 법 내용이 된 것이다.

4조 접근권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16조 2항에 신설된 이유도 같은 이유다.

>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 상의 한계만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며, 그들의 보다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접근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장애 전문가들은 장애는 한 개인의 신체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에 의해 발생하며[A≠B], 따라서 이러한 손상과 기능 저하를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고, 가능한 한 비장애인 혹은 평균적인 사람과 똑같게 혹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A=B]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남과 다르게 대하고, 남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A≠B]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을 남과 똑같이 대하고, 남과 똑같이 버스타고, 지하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A=B]이 차별 철폐라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애 인식과 차별 인식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비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을 무능하다고 바라본 결과, 얻어진 인식으로써, 최근 청각장애인들과 관련해서 병리학적 관점이 거부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적 관점과 대치되는 인식이다.

최근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deaf person), 무능한 사람(disable)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seeing person), 유능한 사람(able)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정보를 청각화했을 때(A)보다 정보를 시각화했을 때(B)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신들은 A 방법보다 B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데, 기

존의 A 방법에 익숙한 대부분의 건청인들 혹은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A 방법만으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참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애(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 혹은 Activity Limitation)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오히려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라는 것[A=B]은 오히려 차별이며, 장애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남과 다른 방법, 청각장애인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B 방법이 허락되는 사회일 때[A<B],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제거되고,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된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이유는 단순히 청각장애인 관련 공학 기기 및 기술의 개발 미비나 지지분함 때문은 아니며,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가능한 한국 사회가 어떠해야 함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차별은 '남과 다르게'가 아니라 '남과 똑같이' 농인을 대하고,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청각장애인들은 지난 몇 백 년 동안 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청인들도 청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농인 피터 폴 교수의 수업에서는 교수는 청인 학생에게 음성 언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할 때 수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정보의 시각화에 근거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보다 많은 농인들과 청인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접근 및 이용가능한 사회는 그들의 유능함(Deaf Power)에 근거하여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대한 통제 권한을 돌려주는(Deaf Empowerment) 방향으로 방향매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청각장애인의 무능력(disability)이 아니라 그들의 유능함(ability),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바램(want)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한 개인 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 향상만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사회, 특히 청인들과 농인들이 생활방식, 문제해결방식, 공존방식에 대한 협상과 청각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청인 중심의 정보접근 방식, 생활방식, 업무 처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직성과 하나만 아는 무능력,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